

2024년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사업 주요 안내사항

<안전보건공단 산업보건실, 2023.12.27.(수)>

①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대상 건설일용직 여부 확인절차 강화

- 건설일용직 인정 증빙서류(2가지) 명확화 및 관련 내용 입력 또는 첨부하여 건설일용직으로 확인된 근로자에 한하여 비용지원 가능

【 건설일용직 인정 증빙서류 】

1.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

2. 건설근로자공제회 발급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(건설근로자 복지수첩)

※ 특례 외국인 근로자 건설업 취업인정증, 근로계약서 등 기타 서류 불인정

【 확 인 절 차 】

① 「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」으로 확인한 경우

- 검진기관이 K2B 전산 시스템으로 특수건강진단 결과 전송 시,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등록번호 입력
- 공단이 보유한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자 명단과 연동되어 정보가 일치하면 특수건강진단 결과 파일 전송 및 비용청구 가능
- ※ 정보 불일치 시, 특수건강진단 결과 파일 전송 및 비용청구 불가능

② 「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」로 확인한 경우

- 검진기관이 K2B 전산 시스템으로 특수건강진단 결과 전송 시,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발급한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(jpg 형식만 가능) 첨부
-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특수건강진단 결과 파일 전송 및 비용청구 가능하며, 증빙자료 미첨부 시, 파일 전송 및 비용청구 불가능
-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건설일용직이 입증된 수검자만 비용지원 가능

② 사업 참여 신청 이전 특수건강진단 실시내역 비용지원 불가

-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사업에 참여 신청한 이후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만 비용지원 가능
- ※ 단, 사업 참여 신청 개시일(추후 공지) 이전에 실시한 특검 내역은 비용지원 가능

③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대상 유형별·규모별 지원비율 일부 변경

-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대상 유형별·규모별 지원비율 일부 변경
예정으로 세부내용은 2024.1.2.(화) 공지 예정